

'20년 7-8월 주요국 지재권 동향

《 목 차 》

I. 유럽 p.2

- EPO, 3D 프린팅 기술 특허 출원 현황 발표
-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'특허', '의약품특허추가보호증명', '권리소진' 제도 운영 방법

II. 중국 p.3

- 중국 특허법 개정안(초안 2차 심의본) 주요 내용
- 중국 법원의 상표권 침해 처벌 관련 동향
- CNIPA, IP5 특허청장 화상회의 개최

III. 일본 p.4-5

- 일본 공정위, 스타트업의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발표
- 일본 신임 특허청장 임명
- JPO, 금지청구권 관련 재검토 논의
- JPO, '제2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' 책정

IV. 미국 p.6

- USPTO, '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' 개시
- USPTO, 미국 여성 발명자에 대한 후속 보고서 발표
- USPTO, 팬데믹 상황에서 위조상품 근절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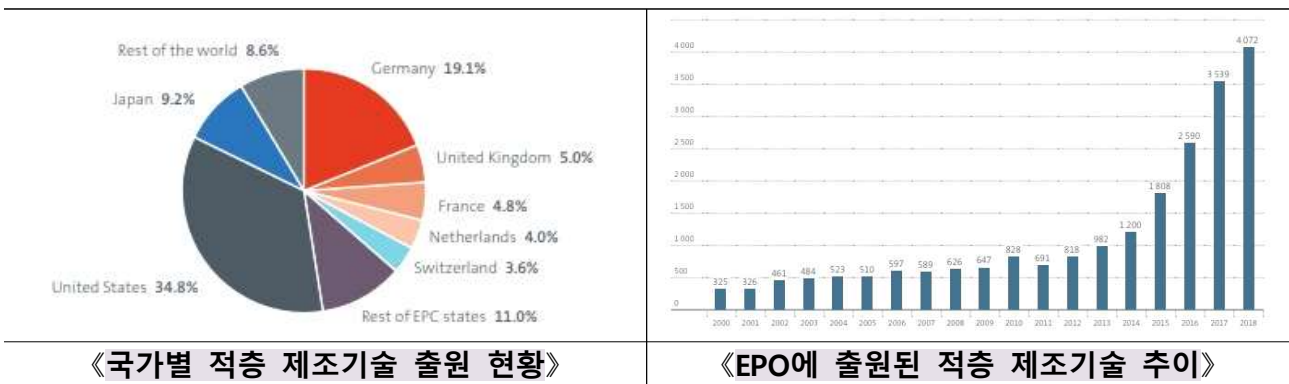
V. WIPO p.7-8

- WIPO, 지식재산(IP) 및 인공지능(AI) 회의 개최
- WIPO, 마드리드 출원 지원 서비스 개시
- WIPO, 글로벌혁신지수(Global Innovation Index 2020) 2020 발표

I. 유럽

□ EPO, 3D 프린팅 기술 특허 출원현황 발표

- 유럽특허청(EPO)은 “특허와 적층 제조 - 3D 프린팅 기술의 트렌드”를 통해, '10~'18년까지 EPO에 출원된 3D 프린팅 기술과 관련된 출원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
 - **(국가별 현황)** EPO에 접수된 적층 제조기술 관련 특허의 47%를 독일·영국·프랑스 등 유럽국가가 차지하고 있으며, 개별국가로는 미국(34.8%)의 비중이 가장 높음
 - **(분야별 현황)** 적층 제조기술을 많이 출원하는 분야는 건강, 에너지, 운송 순
 - **(다출원 기업)** 적층 제조기술 상위 25개 출원자의 출원이 전체의 30%를 차지하며, 상위 25개 출원자 중 11개는 미국기업, 8개는 유럽기업이 포함



□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특허, SPC, 권리소진 제도 운영방법

- 영국지식재산청(UKIPO)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('21.1.1) 이후 운영될 특허, 의약품특허추가보호증명(SPC), 상표병행수입 및 권리소진 제도 안내
 - **(특허)** 유럽특허출원을 관장하는 EPO는 EU의 기관이 아니므로, 브렉시트는 현행 유럽특허시스템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
 - **(SPC*)** 영국의 현행 SPC 법제는 전환기간 중에도 유지되고, 이미 부여받은 영국의 SPC는 효력을 계속 유지하므로, 별도조치가 필요하지 않음
 - * (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) 의약품관련 특허의 존속기간 만료후 의약품 시판허가 등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제도
 - **(권리소진*)** 전환 이후 영국에서 EEA로 병행수출하는 경우, 영국에 출시된 제품은 EEA에서 권리가 소진될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, 종전과 달리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
 - * (권리소진의 원칙) 지식재산권자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권을 구현한 제품이 판매 등의 방식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, 이후에 위 제품을 사용하거나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

II. 중국

□ 중국 특허법 개정안(초안 2차 심의본) 주요내용

-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디자인 정의 규정, 직무발명자 장려, 특허권 남용의 반독점법 처리, 특허권 개방허가 등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중국 특허법 개정안」 발표
 - **(디자인 정의 규정)** 부분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디자인의 정의를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설계로 개정(제2조)
 - **(직무발명자 장려)** 직무발명자의 특허출원 권리와 처분·실시·활용 등에 대한 사항(제6조) 및 직무발명자의 지분권, 배당 등 재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추가(제15조)
 - **(특허권 남용의 처리)** 특허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법(공정거래법) 처리를 신설(제20조)
 - **(특허권 개방허가)** 누구에게든지 특허권 실시를 허가하는 개방허가 제도 신설(제50-52조)

□ 중국 법원의 상표권 침해 처벌 관련 동향

- 상하이 푸동법원은 영국 다이슨社 헤어드라이어 모조품의 생산·판매·창고관리 등의 관련자들에게 등록상표 도용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형 및 벌금을 부과 판결 선고(1심)
 - **(개요)** 중국 선전시의 디메이쓰아오社는 '18.5월부터 다이슨社 헤어드라이어의 모조품에 다이슨社의 등록상표(**dyson**)를 부착하여 생산·판매하고, 공안에 단속됨
 - **(판결내용)** 법원은 등록상표와 동일 상표를 사용하고, 판매금액이 거액이며,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 도용죄 등을 적용하여, 주범 및 공범에게 징역·벌금형 선고
 - **(현지동향)** 중국 법원의 모조품 관련자 형사처벌 선고에 대해, 중국 언론은 '전국 위조 단속 제1사건'으로 명명하며, 중국의 지재권 형사 보호 사례로 적극 홍보

□ CNIPA, IP5 특허청장 화상회의 개최

-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(CNIPA)은 제13차 IP5 특허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(7.21)하고,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시대에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
 - 혁신 촉진 및 장려 계획을 마련하고, 이에 관한 모범 관행을 공유함으로써 혁신가와 국제 지식재산 커뮤니티가 세계 경제·사회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논의
 - 신기술과 AI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해 IP5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, 절차의 조화·업무공조 강화·심사 품질 및 효율성 개선·특허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 합의

III. 일본

□ 일본 공정위, 스타트업의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발표

- 일본 공정위는 1,50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타사(대기업 등)와 업무 제휴 시,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당한 경험의 유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
 - 기밀유지 협약 시 스타트업의 기밀 취급, 개념증명(Proof of Concept)의 대가 및 성과물 설정, 공동 연구개발에서의 지식재산권 귀속, 라이선스에서의 성과 이용 등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계약 및 요구가 상당하다는 의견
 -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은 스타트업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연구 계약 및 라이선스 계약 등의 협상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설명하는 '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표준계약서 ver 1.0'을 정리하여 발표

□ 일본 신임 특허청장 임명

- 일본 특허청(JPO)은 마츠나카 아키라 前 특허청장* 후임으로 **카스타니 토시히데**(糟谷 敏秀) 경제산업성 대신관방장을 임명(7.14.)
 - * 現 총리실 內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 및 재건 정책실 사무총장(Director-General)
 - 신임 청장은 취임인사를 통해, 코로나19로 혁신의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, JPO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고속 심사 체제를 유지하고, AI·IoT 기술의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, 지식재산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조



- 카스타니 토시히데(糟谷 敏秀) '61生
- (학력) 도쿄대 법학대학 학사('84)
하버드 비즈니스 스쿨('89)

《 주요이력 》

- ('18) 경제산업성 대신관방장
- ('17)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장
- ('15)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장
- ('13) 경제산업성 대신관방 총괄심의관
- ('11)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통상기구부장
- ('10) 경제산업성 대신관방회계과장
- ('08)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기업행동과장
- ('84) 통상산업성에서 공직 시작

□ JPO, 금지청구권 관련 재검토 논의

- 일본 특허청(JPO)은 일본 내 자동차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특허가 침해된 경우에 특허권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'금지청구권'에 대하여 재검토 논의를 진행중
 - * (금지청구권) 개인 및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, 현재 미국, 일본 등이 도입
- 자동차 업계는 차량 제조사 이미 다수의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, 통신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, 특허권자의 소송 제기에 대한 우려 상당
- 사물인터넷(IoT)에 대응한 특허제도 재검토 논의에서, 특허법 내 금지청구권 제한이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론은 아직 제시되지 않음
- 특허가 침해된 경우의 금지 청구는 특허 보유자의 권리이지만, 일본에서는 민법상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
 - 민법 내 금지청구의 인정범위가 명확하지 않아,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법에 규정을 별도로 두고 금지청구 조건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

□ JPO, '제2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' 책정

- 일본 특허청(JPO)은 지식재산 분야의 지역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'제2차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(2020-2022)'을 책정
- 제1차 행동계획('16-'19)을 개정한 이번 행동계획은 JPO와 독립행정법인 공업 소유권정보·연수관(INPIT)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차기 행동계획

《 주요내용 》

(1) 기본방침 1 : 목표를 겨냥한 지역·중소기업 지원의 내실화

- 관계 주체마다 목표를 겨냥하고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이용·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도 수준을 높여 기업의 「이익」 극대화를 도모

(2) 기본방침 2 : 지역·중소기업 지원 플레이어의 연계와 지원의 융합


- JPO 외 관계 부처, 다른 관련 주체나 지역의 지원 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, 각 지원 사업과 JPO의 지식재산 정책을 융합하여 수평적·일체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

(3) 기본방침 3 : 핵심성과지표의 설정·공유와 새로운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한 대응

- 각 주체가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계획-실행-평가-개선 사이클을 돌리면서 정기적으로 자기 검증을 실시해 다른 관련 주체에게 공유함으로써 관계 주체 간의 활동 상황을 서로 파악

IV. 미국

□ USPTO, '신속심판 파일럿 프로그램' 개시

- 미국 특허상표청(USPTO)는 특허심판원(PTAP) 내에서 신속한 절차를 위하여 '신속심판 파일럿 프로그램(Fast-Track Appeals Pilot Program)' 시작을 발표
- 수수료(\$400)를 내고 신속 심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청하면, 평균적인 결정계 심판(ex parte appeal)의 검토는 심판 착수 허가로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기대
-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'Track One 우선심사 프로그램*'의 연장선 역할을 하며 출원인은 특허심판에서 신속한 결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
- *  특허우선심사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출원 후 약 12개월 이내에 심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동시에 현재 가속심사 프로그램보다 더 적은 요건을 요구하며, 사전심사검색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.
- 특허심판원은 2015년에 평균 30개월 걸리던 심판절차를 최근 14개월로 단축하였으며, 그 결과 발명가와 기업이 발명품을 더욱 빠르게 상품화 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

□ USPTO, 미국 여성발명자에 대한 후속보고서 발표

- 미국특허청은 2019년에 미국 여성 발명자에 대한 리포트 발표 후, 약 100만 건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업데이트한 후속 보고서*를 발표
- * "Progress and Potential: 2020 Update on U.S. Women Inventor-Patentees,"
- USPTO는 여성의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, 그 결과 미국 내 여성발명가의 특허 출원·등록 비율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음을 강조

□ USPTO, 팬데믹 상황에서 위조상품 근절 강조

- USPTO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산업의 확산으로 인하여 위조상품의 거래 비중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되었으며,
- 그에 따라,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확산에 대한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발표하며 현 상황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
- 특히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의약품, 진단 키트, 손소독제 등과 같은 제품의 위조상품으로 소비자를 위협에 처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한 대응 필요성 언급

V. WIPO

□ WIPO, 제2차 지식재산(IP) 및 인공지능(AI) 회의 개최

- WIPO는 회원국, 유관단체, NGOs 등과 지식재산(IP)과 인공지능(AI)을 주제로 총 12개의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실시
-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을 고려할 때 현행 지식재산권 법령체계의 개정이 시급하지는 않지만,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관련 법제도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

《 주요 논의내용 》

▲ 특허(발명자와 소유자)

- 현재 인공지능 수준은 인간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명을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,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과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창출한 발명에 대하여 다르게 접근 필요
-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출된 발명은 현 제도 내에서 충분히 다를 수 있으며,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인 발명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되 이에 대한 입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

▲ 특허대상 및 특허요건, 진보성, 발명의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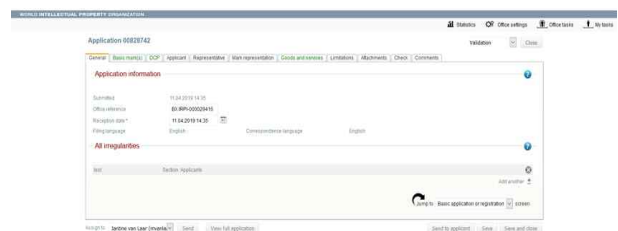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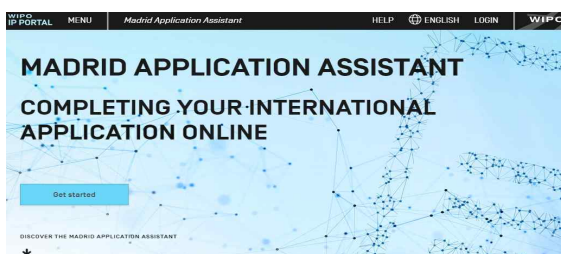
-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제로 발명의 작동이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허대상이 될 수 있고,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사용하는 도구로 접근하면 될 것
- 다만, 인공지능 자체가 통상의 기술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발명을 하는 경우,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

▲ 저작권 침해 및 예외,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, 영업비밀

- 데이터 마이닝은 지식재산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같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적용할 법률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

□ WIPO 마드리드 출원 지원 서비스 개시

- WIPO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절차를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개시
- 마드리드 출원 지원(Madrid Application Assistant) 서비스를 통해, 국제상표 출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,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



《마드리드 출원 지원 웹페이지 화면》

□ WIPO, 글로벌혁신지수(GII) 2020 발표

I. 글로벌 혁신지수 2020(Global Innovation Index 2020) 개요

Carroll SC Johnson College of Business

INSEAD

WIPO

GLOBAL INNOVATION INDEX 2020

Who Will Finance Innovation?



CNI

CASSIUT SYSTEMS

CNI

-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는 유럽경영대학원, 코넬대 경영대학원 공동주관으로, 2007년부터 매년 각국의 혁신환경 및 활용 등을 평가하여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
- 131개국 대상으로 80개 세부 항목에 따라 '혁신투입지표'와 '혁신산출지표'를 평가하여 순위 산출
 - ▲ (혁신투입지표) 제도, 인적자본과 연구, 인프라, 시장 성숙도, 기업 고도화
 - ▲ (혁신산출지표) 지식 및 기술 산출물, 창의적 산출물

II. 한국 평가 결과

- 한국은 작년에 비해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하여 종합 10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TOP10 안으로 진입하였고,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종합 2위 차지
- (종합순위) ①스위스 ②스웨덴 ③미국 ④영국 ⑤네델란드 ⑥덴마크 ⑦핀란드 ⑧싱가포르 ⑨독일 ⑩**한국** ⑪홍콩 ⑫프랑스 ⑬중국 ⑭일본
- ▲ (혁신투입지표) 시장 환경(10위), 연구개발(1위), 정보통신기술(2위), 지역경쟁강도(4위), GDP 대비 기업수행 총연구개발투자비(2위)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,
 - 정리해고비용(109위), 국내에서 3차 교육을 받는 외국인 비율(73위), GDP당 에너지 소비량(95위), 실행관세율(88위),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(110위) 등에서 미흡한 평가
- ▲ (혁신산출지표) **GDP 대비 특허건수(1위)**, 전체 무역대비 첨단기술산업 순수출(4위), 무형자산(2위), GDP 대비 디자인 건수(1위)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,
 - 전체 무역대비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출비용(89위), 출판산업비율(98위) 등에서 미흡한 평가

한국의 글로벌 혁신지수 부문별 순위

제도 (Institutions)	29
인적자본&연구 (Human capital&research)	1
사회기반시설 (infrastructure)	14
시장 성숙도 (Market sophistication)	11
비즈니스 성숙도 (Business sophistication)	7
지식&기술 아웃풋 (Knowledge& technology outputs)	11
창의적 아웃풋 (Creative outputs)	14